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0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부여(임광현의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여(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다음 공제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 3/103 - 중고자동차: 10/110 ○ 한도액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 - 중고자동차: 한도액 없음 ○ 적용기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2025년 12월 31일까지	☐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여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u>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u>를 수집하는 사업자(<u>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심거래사업자</u>)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다음 공제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현행과 같음) - 중고자동차 및 <u>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u>: 10/110 ○ 한도액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u>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u>: 2028년 12월 31일까지

* 임광현의원안 2024. 8. 28. 발의(의안번호 3305)

☐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안심거래 사업자¹⁾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휴대폰”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5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는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추는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²⁾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 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110분의 10의 공제율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음.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지속적인 공제율 축소로 2021년 현재 103분의 3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11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다가 2017년 7월부터 중고자동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부터 110분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매입세액 공제율 변천과정]

구분	1993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재활용폐자원	10/110	8/108	6/106	6/106	3/103	5/105	3/103
중고자동차	10/110	10/110	10/110	9/109	9/109	9/109	10/110

- 한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는 재화로서의 성격이 상이하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차이가 있음.

먼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중고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 여전히 자동차 고유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연한이 오래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서, 중고자동차 가격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³⁾.

2017년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이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같이 전부 공제하여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재활용폐자원은 중고자동차와 달리 재화로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활용폐자원의 가격에는 본래 재화의 가치가

3) 예를 들어 개인이 새 자동차를 처음에 3,300만원(공급가격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에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를 원 가격의 1/3인 1,100만원에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1,100만원에는 부가세 100만원(처음에 납부한 300만원의 1/3)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수리·정비하여 다시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정비 등에 따른 부가가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고차매매업자는 1,300만원(취득가격 1,100만원 + 부가가치 200만원)의 10%인 13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중고차 구매자는 1,430만원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됨. 자동차의 총 부가가치는 3,200만원이므로 그 10%인 320만원이 부가세로 납부되었어야 하는데 이 경우 430만원이 납부되어 110만원의 중복과세가 발생하였으며, 그 부담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된 것임.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⁴⁾, 재화를 처음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분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격의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이유는 조세지원을 통해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을 장려⁵⁾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 때문이며, 재활용업체에 폐자원을 판매하는 자가 소위 ‘폐지수거 노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제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2023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1조 3,853억원으로, 동 특례와 관련한 조세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 1조 6,11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8,888	9,453	9,891	11,760	14,409	13,853	15,301	16,11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최근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급형 휴대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중고휴대폰 거래 시장도 함께

4) 예를 들면 신문의 경우 신문의 원 가격에는 정보재로서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만 폐지로 수집될 때의 가격에는 단순히 종이의 무게만 반영됨.

5) 재활용업체에 폐자원을 판매하는 폐지수거 노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휴대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 2023년 6월 기준 387만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⁶⁾됨.

이러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업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및 거래사실 확인제도⁷⁾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이처럼 국내 중고휴대폰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도입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와 유사하게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고휴대폰 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⁸⁾가 발생하는데,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중복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중고휴대폰의

6)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2023.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분실·도난에 따른 통신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제도

8) 전술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취지 참고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중고휴대폰 거래의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중고휴대폰의 주요 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휴대폰에 대하여는 거래이력이 관리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중고휴대폰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고 관련 세원이 양성화될 수 있음.

셋째, 현재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의 중고휴대폰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감소하는 부가가치세 세수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그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고휴대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세수는 554억 7,000만원이고, 소비자·정부·환경에 대한 편익은 359억 2,000만원이며, 경제성 분석 결과 그 비율이 0.648인 것으로 분석⁹⁾되었음.

9) 202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2023. 9.),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중고휴대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단위: 억원)

총비용	총편익				B/C 비율
조세수입 감소액	소비자	정부	환경	합계	
554.7	347.9	3.9	7.5	359.2	0.648

자료: 202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2023. 9.),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둘째, 중고가전제품·중고가구·중고골프채 등 다른 중고제품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술한 것처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및 거래사실 확인제도가 2024년 7월에 도입되었으므로,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한 이후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규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규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